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교육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6년 6월 24일까지에서 2028년 6월 24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교육부령 제 호

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중 “2026년 6월 24일”을 “2028년 6월 24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	교육부령 제184호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
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9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디지털소통팀은 <u>2026년 6월 24일까지</u> 존속한다.	제2조(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2028년 6월 24일까지</u> -----.